

의안 번호	453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5. 4. 21.
전문위원 이 현 숙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의장 제의
- 나. 의안번호 : 제453호
- 다. 제안일자 : 2025. 4. 7.
- 라. 회부일자 : 2025. 4. 10.

2. 제안이유

- 성북구의회 사무국 기능에 따른 팀별 업무조정을 통해 조직 효율성, 현안 실행력을 제고하고, 전문위원의 보직기준을 확대하여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의정팀·정책지원팀 업무 내용 신설·조정(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 정책지원관 관리, 의원 교육 및 후생복지, 의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책지원팀 업무로 조정
- 나.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의원 의정활동지원 관련 정책지원관 업무내용 현행화(안 제5조제2항 제7호)

-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2025. 4. 7. ~ 2025. 4. 14.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성북구의회 사무국 팀별 업무조정을 통해 현안 실행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문위원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사무분장)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무분장) ① (생략) ② 팀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3조(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의정팀

가. ~ 다. (생략)

라. 의회의 의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마. · 바. (생략)

사. 사정업무

<신설>

아. · 자. (생략)

차. 문서관리 · 보안 및 관인관수

카.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

타. (생략)

파.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하. · 거. (생략)

너. 그 밖에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 3. (생략)

4. 정책지원팀

가. 조례 제정 · 개폐, 예산 ·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 조사 · 분석 지원

나.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

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라.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

마. 의원의 공청회 · 세미나 ·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바. 의원 교육연수

사. 의원연구단체 운영

아.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 분석 ·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의전-----

마. · 바. (현행과 같음)

<삭제>

자. 일반직공무원의 재산등록,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사. · 아. (현행 아목 및 자목과 같음)

차. -----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카. (현행 타목과 같음)

<삭제>

타. · 파. (현행 하목 및 거목과 같음)

하. ----- 팀의 ---

2. · 3. (현행과 같음)

4. 정책지원팀

가. 정책지원관 평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나. 의원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라. 의회 표창업무에 관한 사항

마. 의원 신상, 재산등록,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바. 의원 행동강령 등 청렴에 관한 사항

- 중복된 업무는 삭제 및 수정하여 조정한 사항이며, 현재 정책지원팀 분장사무 중 가목에서 마목 및 아목은 해당 규칙 제5조제2항에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기술한 것으로, 향후 정책지원관 배치가 위원회로 배치될 예정으로 삭제한 사항이며 의정팀의 일부 사무를 정책지원팀 사무로 이관 조정한 사항임.

나. 안 제4조(전문위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u>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보한다.</u> ② (생략)	제4조(전문위원) ① ----- ---- <u>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u> ②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임.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규칙에 있는 부정확한 표현을 정비 및 현행화하고, 사무국 팀별 업무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 및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